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3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이언주 · 민병덕 · 이재관

김준혁 • 이개호 • 이상식

정진욱 • 박민규 • 김동아

김병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 중앙대책 본부장 등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군 부대가 국가시책 사업 등에 동원되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인력의 대민지원 동원은 2013년 6만 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 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군 부대 동원이 증가하면서 군 인력이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대응이나 대민지원에 동원되거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하여 무리하게 재난현장 등에 동원되면서 인명사 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 동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군사 목적의 부대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부대 동원 외에는 상관이 부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재난대응 활동을 명령·지시할 수 없도록 하며, 재난상황에 투입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원 범위를 벗어난 부대 동원을 명하거나 부대의 안전관리역량 등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지시하여 임무 수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한 상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동원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대의 재난 동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제6항 및 제52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상관은 「통합방위법」 제12조의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부대 동원 등 국방·군사 목적의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 지원 요청에 의한 동원 외에는 부대 동원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난상황에 부대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재난규모 및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상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 지원 요청에 의하여 부대를 동원하는 경우 부대를 재난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되는 부대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원 범위를 벗어난 부대 동원을 명하거나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

령하거나 지시하여 임무 수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한 상관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 | 개 정 안 |
|---------------------|-----|---|-----|----------------------|
| 제36조(상관의 | 책무) | 1 | ~ 4 |)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 ④ |
| (생 략) | | | |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 | | ⑤ 상관은 「통합방위법」 제1 |
| | | | | 2조의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 |
| | | | | 른 부대 동원 등 국방・군사 |
| | | | | 목적의 동원 및 「재난 및 안 |
| | | | | 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 |
| | | | | 제3호에 따른 부대 지원 요청 |
| | | | | 에 의한 동원 외에는 부대 동 |
| | | | | 원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 |
| | | | | 난상황에 부대를 동원하는 경 |
| | | | | 우에는 재난규모 및 피해 상황 |
| | | | | 을 고려하여 부대의 안전관리 |
| | | | | 역량 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 |
| | | | | 는 활동을 명령하거나 지시하 |
| | | | | <u>여서는 아니 된다.</u> |
| <u><신 설></u> | | | | ⑥ 상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
| | | | |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
| | | | | 따른 부대 지원 요청에 의하여 |
| | | | | 부대를 동원하는 경우 부대를 |
| | | | | 재난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대 |
| |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동원되는 부대에 대한 안전관 |

제52조(벌칙) <신 설>

<u>①</u> · <u>②</u> (생 략)

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벌칙) ①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원 범위를 벗어난 부대 동원을 명하거나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또는 지원 역량 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하거 나 지시하여 임무 수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명 령이나 지시를 한 상관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 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 항과 같음)